

□ 제도 안내

○ (목적) 환경정보공개를 통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녹색경영 유도

※ 추진근거 :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6조의8, 제16조의9, 제31조 제4항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(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)

○ (대상) 녹색기업, 공공기관, 환경영향이 큰 기업,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등 1,971개 기업·기관(소속사업장 4,247개소, '25년 기준)

※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국공립대학, 지방공기업, 지방의료원,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,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, 녹색기업 등

○ (항목) 업종에 따라 제조, 공공행정, 교육서비스, 보건, 기타서비스, 기타산업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유형별 19개~27개 항목*으로 구성

* 기업개요, 녹색경영체계, 자원·에너지 사용량,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 (의무/자율 구분)

<표> 6개 유형 구분

유형	제조	공공행정	교육서비스	보건	기타서비스	기타산업
항목 (개)	총 27 의무13, 자율14	총 19 의무8, 자율11	총 19 의무6, 자율13	총 19 의무7, 자율12	총 19 의무6, 자율13	총 27 의무13, 자율14

○ (절차) 대상기업 공고(환경부, ~4.30) → 정보 등록(기업·기관, ~6.30)

→ 검증(기술원, 7~12월) → 대국민 공개(기후에너지환경부, ~12.31)



※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별도의 추진 절차로 진행 예정

○ (환경정보공개 홈페이지) env-info.kr 환경정보조회를 통한 기업·기관의 공개된 환경정보 확인 가능

□ 2026년도 공개 항목

(●: 의무, ○: 자율, -: 미적용)

구분	공개항목	제조	공공행정	교육서비스	보건	기타서비스	기타산업
		총27 의무13 자율14	총19 의무8 자율11	총19 의무6 자율13	총19 의무7 자율12	총19 의무6 자율13	총27 의무13 자율14
기업개요	기업 개요	●	●	●	●	●	●
	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	○	○	○	○	○	○
전략 및 녹색경영	녹색경영 전략 및 방침	○	●	○	○	○	○
	녹색경영 전담조직/교육훈련/내부심사 등	●	●	●	●	●	●
자원/ 에너지	원부자재·용수·에너지 절감투자 및 기술도입	●	○	○	○	○	●
	원부자재 사용량	●	-	-	-	-	●
	용수 사용량·재활용량	●	●	●	●	●	●
	에너지 사용량	●	●	●	●	●	●
	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	○	○	○	○	○	○
온실가스/ 환경오염	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	○	○	○	○	○	○
	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	○	○	○	○	○	○
	환경오염물질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	●	○	○	○	○	●
	대기·수질오염·화학물질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	●	○	○	○	○	●
	대기오염물질 배출량	●	-	-	-	-	●
	수질오염물질 배출량	●	○	○	○	○	●
	폐기물 발생량·재활용량	●	●	●	●	●	●
	화학물질 배출량	●	○	○	●	○	●
녹색제품/ 서비스	토양·소음·진동·악취 관리 현황	○	-	-	-	-	○
	녹색제품·서비스 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	○	-	-	-	-	○
	녹색제품·서비스 친환경설계(디자인) 현황	○	-	-	-	-	○
	제3자 인증 및 Type II 인증 제품 현황	○	-	-	-	-	○
	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	○	●	○	○	○	○
	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	○	-	-	-	-	○
사회/ 윤리적책임	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	○	-	-	-	-	○
	환경법규 위반 현황	●	●	●	●	●	●
	환경(지속가능)보고서 발간 현황	○	○	○	○	○	○
	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 현황	○	○	○	○	○	○